

	법규적용여부결정서(법규등록부)			표 준 번 호	법규-18	제 정 일 자	2013.8.28
	도시가스 사업법			개정일자(번호)	2024.10.31(1)	쪽 번 호	1 / 2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제 2 장 도시가스사업	사업의 허가	법 3 조	가스도매사업,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서에 하가를 받아야 함.			해당 없음	
제 3 장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시공기록 등의 보존.제출 (특정가스사용시설)	법 14 조 규칙 20 조의 2	- 시공자는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그 시공기록, 완공도면,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보존하여야 함 - 시공자는 가스사용시설의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다음의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자에게 내주어야 함 [특정가스사용시설] <개정 2024. 10. 31.> 1. 월 사용예정량이 2 천 ㎡(제 1 종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 천 ㎡) 이상인 가스사용시설. 2. 월 사용예정량이 2 천 ㎡(제 1 종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 천 ㎡) 미만인 가스사용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내관 및 그 부속시설이 바닥·벽 등에 매립 또는 매몰 설치되는 가스사용시설 (가정용 가스사용시설은 제외한다) 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시·도지사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가스사용시설 3.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야드 트랙터를 포함한다)의 가스사용시설 4.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를 자동차에 충전하는 가스사용시설 5.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를 설치하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사용시설			-가스사용시설의 시공기록 -월 사용 예정량 : 242,193 ㎡	
	시공 감리 등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완공검사)	법 15 조 규칙 21 조	-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미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함 -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다음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함 <개정 2010. 7. 28.> 1. 가스충전시설의 설치공사 2.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3. 제 4 조제 2 항제 1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가스충전시설의 변경에 따른 공사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변경공사 가. 도시가스 사용량의 증가로 인하여 특정가스사용시설로 전환되는 가스사용시설의 변경공사 나.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호칭지름 50mm 이상인 배관을 증설·교체 또는 이설(移設)하는 것으로서 그 전체 길이가 20m 이상인 변경공사 다. 특정가스사용시설의 배관을 변경하는 공사로써 월 사용예정량을 500 ㎡ 이상 증설하거나 월 사용예정량이 500 ㎡ 이상인 시설을 이설하는 변경공사 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압기나 압력조정기를 증설·교체(동일 유량으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이설하는 변경공사			[■완성□정기]검사증명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법 17 조 영 8 조 규칙 25,26,27 조	-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날을 기준으로 매 1 년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3. 제 21 조제 2 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은 특정가스사용시설은 최초로 그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날 -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도시가스 사고의 예방과 그 밖에 가스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검사를 받아야 함 *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 규칙[별표 7]			[□완성■정기]검사증명서	

	법규적용여부결정서(법규등록부)			표 준 번 호	법규-18	제 정 일 자	2013.8.28																																					
	도시가스 사업법			개정일자(번호)	2024.10.31(1)	쪽 번 호	2 / 2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안전관리규정	법 26 조 규칙 36,37,40,41 조	도시가스사업자는 사업개시 전에 안전관리 규정을 관할관서에 제출 이때, 한국가스안전공사 의견서 첨부		해당 없음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	법 28 조 규칙 47 조	-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야함		해당 없음																																							
	가스사용시설의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법 28 조의 2 규칙 48 조	가스사용자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 설을 가스사용시설로 변경하여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는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시공 자 및 가스사용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함.		해당 없음																																							
	안전관리자	법 29 조 영 15,16 조[별표 1] 규칙 49 조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특정가스사용시설의 관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시설관리업무를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는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 하여야 함	고압가스안전관리 절차서에 직무반영 ■ 자체선임(1명)	-고압가스안전관리 절차서 -안전관리자선임 등 보고서																																							
	안전교육	법 30 조 규칙 50 조	-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의 안전관리담당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안전교육 수료		안전교육 수료	교육수료증																																						
	제 3 장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table><tr><th>교육과정</th><th colspan="2">교육대상자</th><th>교육시기</th></tr><tr><td rowspan="6">가. 전문교육</td><td colspan="2">1) 도시가스사업자(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를 포함한다)의 안전관리 책임자.안전관리원.안 전점검원</td><td rowspan="6">신규 종사 후 6 개월 이내 및 그 후에는 3 년이 되는 해마다 1 회</td></tr><tr><td colspan="2">2)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대행자에 채용된 기술인력 중 안전관리 책임자와 안전관리원</td></tr><tr><td colspan="2">3)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td></tr><tr><td colspan="2">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7 조에 따른 제 1 종 가스시설 시공자에 채용된 시공관리자</td></tr><tr><td colspan="2">5) 시공사(「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7 조에 따른 제 2 종 가스시설 시공업자의 기술 인력인 시공사 양성 교육이수자만을 말한다) 및 제 2 종 가스시설 시공업자에 채용된 시공관리자</td></tr><tr><td colspan="2">6) 온수보일러 시공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7 조에 따른 제 3 종 가스시설 시공업자의 기술 인력인 온수보일러 시공자 양성교육과 온수보일러 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만을 말한다)와 제 3 종 가스시설 시 공업자에 채용된 온수보일러 시공관리자</td></tr><tr><td rowspan="2">나. 특별교육</td><td colspan="2">1) 보수.유지관리원</td><td rowspan="2">신규 종사 시 1 회</td></tr><tr><td colspan="2">2) 사용시설 점검원</td></tr><tr><td rowspan="2">다. 양성교육</td><td colspan="2">1) 도시가스시설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자</td><td rowspan="2">2) 사용시설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자</td></tr><tr><td colspan="2">2) 가스시설 시공관리자가 되려는 자</td><td rowspan="2">4) 시공자가 되려는 자</td></tr><tr><td colspan="2">5) 온수보일러 시공자가 되려는 자</td><td rowspan="2">6) 온수보일러 시공관리자가 되려는 자</td></tr><tr><td colspan="2">7) 안전점검원이 되려는 자</td><td rowspan="2">8) 폴리에틸렌관 용착원이 되려는 자</td></tr></table>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시기	가. 전문교육	1) 도시가스사업자(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를 포함한다)의 안전관리 책임자.안전관리원.안 전점검원		신규 종사 후 6 개월 이내 및 그 후에는 3 년이 되는 해마다 1 회	2)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대행자에 채용된 기술인력 중 안전관리 책임자와 안전관리원		3)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7 조에 따른 제 1 종 가스시설 시공자에 채용된 시공관리자		5) 시공사(「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7 조에 따른 제 2 종 가스시설 시공업자의 기술 인력인 시공사 양성 교육이수자만을 말한다) 및 제 2 종 가스시설 시공업자에 채용된 시공관리자		6) 온수보일러 시공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7 조에 따른 제 3 종 가스시설 시공업자의 기술 인력인 온수보일러 시공자 양성교육과 온수보일러 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만을 말한다)와 제 3 종 가스시설 시 공업자에 채용된 온수보일러 시공관리자		나. 특별교육	1) 보수.유지관리원		신규 종사 시 1 회	2) 사용시설 점검원		다. 양성교육	1) 도시가스시설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자		2) 사용시설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자	2) 가스시설 시공관리자가 되려는 자		4) 시공자가 되려는 자	5) 온수보일러 시공자가 되려는 자		6) 온수보일러 시공관리자가 되려는 자	7) 안전점검원이 되려는 자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시기																																									
가. 전문교육	1) 도시가스사업자(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를 포함한다)의 안전관리 책임자.안전관리원.안 전점검원		신규 종사 후 6 개월 이내 및 그 후에는 3 년이 되는 해마다 1 회																																									
	2)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대행자에 채용된 기술인력 중 안전관리 책임자와 안전관리원																																											
	3)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7 조에 따른 제 1 종 가스시설 시공자에 채용된 시공관리자																																											
	5) 시공사(「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7 조에 따른 제 2 종 가스시설 시공업자의 기술 인력인 시공사 양성 교육이수자만을 말한다) 및 제 2 종 가스시설 시공업자에 채용된 시공관리자																																											
	6) 온수보일러 시공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7 조에 따른 제 3 종 가스시설 시공업자의 기술 인력인 온수보일러 시공자 양성교육과 온수보일러 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만을 말한다)와 제 3 종 가스시설 시 공업자에 채용된 온수보일러 시공관리자																																											
나. 특별교육	1) 보수.유지관리원		신규 종사 시 1 회																																									
	2) 사용시설 점검원																																											
다. 양성교육	1) 도시가스시설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자		2) 사용시설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자																																									
	2) 가스시설 시공관리자가 되려는 자			4) 시공자가 되려는 자																																								
5) 온수보일러 시공자가 되려는 자		6) 온수보일러 시공관리자가 되려는 자																																										
7) 안전점검원이 되려는 자			8) 폴리에틸렌관 용착원이 되려는 자																																									
제 8 장 보칙	보험가입	법 43 조 영 24 조 규칙 64 조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가스사용자는 보험에 가입 (단, 월 사용예정량이 3 천 ㎡ 이상인 자)		보험가입	보험가입증명서류																																					